UR 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

– 산업연구원 –

1. 주요분석결과

– UR타결에 따라 국내산업의 수출증대효과는 49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반면 수입증대효과는 4억 5천만달러에 그칠 것임. 그 결과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45억 천만달러에 이를 것임.

· 수출증대효과는 제조업부문 총수출의 6.68%에 상당하며, 수입증대효과는 총수입의 0.76%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주요국의 관세율수준이 UR이전에 비해 33% 정도 인하될 것이며, 철강등의 부문에서 관세장벽이 철폐될 것이기 때문임.

– 한편 수입증대효과가 작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임. 즉 우리나라 관세율이 UR에서 양허한 수준보다 이미 낮은 수준에 있어 UR 이후 관세율인하의 부담이 없으나, 다만 무세화 부문에서의 관세율인하가 이루어지게 됨.

–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UR 타결로 규범분야, 예를 들어 반덤핑관세부과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됨.

– UR 타결로 우리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입이 0.76% 정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보조금지원 정책운용에 제약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점과 국내정책을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임.

2. 분석내용

(1) 계량분석결과

- 본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일반균형연산모형이 이용됨.
  - 본분석에서는 UR최종안이 지난 1988년의 몬트리올각료회의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와 아울러 1993년 7월 동경에서 합의된 QUAD간의 무세화까지 포함할 것을 가정한 것임.
  - 즉 주요국들간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건설장비, 의료장비, 철강부문, 의약품에 관한 무세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임.
- 정책실험결과를 설명하기전에 먼저 언급할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본분석의 결과는 UR 타결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2~3년후에 나타나게 될 총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임. 따라서 이행기간(5년)동안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임.
  - 둘째, 본분석은 산업연관관계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임. 어느 산업의 무역장벽완화는 제일 먼저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해 타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따라서 본분석의 결과는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감안한 결과임.
- 한편 산업별로 보면 화학산업이 18억 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됨.
  - 이처럼 화학·석유·고무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난 첫번째 이유로는 동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크기 때문임.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금년에 발표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전방연쇄효과를 산출해 보면, 화학·석유·고무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1.82로서 제조업 전부문중 가장 크게 나타났음. 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동산업이 여타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UR 이후의 국내산업활성화 효과가 동산업에 크게 파급된다는 점임.
  - 두번째 이유로는 동산업 국제경쟁력의 회복정도

<표-1> UR타결의 산업영향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 산업	수출		수입		무역수지	
	'92 실적	영향	'92 실적	영향	'92 실적	영향
식료품·담배	847	11	2268	-25	-1421	36
섬유·가죽	19874	180	3797	-2	16077	182
제재 및 목제품	261	94	917	-15	-656	109
종이·펄프·인쇄	612	-24	1653	17	-1041	-41
화학·석유·고무	7901	1803	10940	-432	-3039	2235
비금속광물	579	17	1031	2	-452	15
금속제품	7344	1783	7983	-76	-638	1859
기계	22928	1015	21756	993	1172	22
-전자	20040	887	7746	354	12294	533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	2888	128	14010	639	-11122	-511
운수장비	9408	37	5429	-1	3980	37
기타제조업	4552	45	3864	-7	688	52
UR의 영향	49억 6천만달러 (6.68% 증대효과)		4억 5천만 달러 (0.76% 증대효과)		45억 천만 달러	

주 : 본산업분류는 국제산업연관표상의 분류에 기초하였음

가 국내여타산업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다는 사실임. 지난 1990년에 동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0.41이었으나, 1991년에는 -0.29로 개선되었고, 1992년에는 -0.16으로 점차 빠른 속도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다음으로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분야는 금속제품산업임.
  - 금속제품산업의 경우 17억 8천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동산업은 UR타결 이후 특히 철강부문의 관세철폐로 인하여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임.
- 기계산업의 경우 수출증대효과는 10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8억 8천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산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됨. 한편 섬유·가죽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증대효과가 1억 8천만달러에 이를 것임.
- 한편 수입측면을 볼 때 기계산업의 수입이 9억 9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산업의 경우 6억 4천만 달러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3억 5천만달러의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됨. 한편, 여타산업의 경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화학·석유·고무산업의 경우 수입이 4억달러 정도 오히려 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UR타결 이후 가동율제고와 생산성향상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이상의 정책실험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산업의 UR의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임.
  - UR에의 참여는 국제경제질서에 합류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 우리나라는 UR이 우리의 이익에도 크게 보탬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UR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예를 들어 농산물분야)에 대해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농산물분야를 비롯한 비제조업분야에 대해서는 엄밀한 손익계산을 전제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표-2> UR타결의 산업영향에 대한 비계량분석 결과

규제근거 / 산 업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MFA	총+	총-
식료품·담배		-			+		1	1
섬유·가죽	+	-	+		+	+-	4	3
제재 및 목제품		-			+		1	1
종이·펄프·인쇄	+	-			+		2	1
화학·석유·고무	+	-		-	+		2	2
비금속광물		-			+		1	1
금속제품	+	-	+		+		3	1
기계	+	-		-	+		2	2
운수장비		-			+		1	1
기타제조업	+	-		-	+		2	2

주 : 이 표는 UR에서의 논의내용과 우리나라 수출품의 피규제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UR협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인 대응은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 것임.

- 둘째, 1993년 11월 APEC에서 합의된 전자·완구·비철금속 등의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가 포함되는 경우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분야의 포함은 매우 중요함.
- 셋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산업에 대한 UR의 긍정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임.
  · UR이 무역장벽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비교열위부문인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UR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장벽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섬유산업에 대한 국제규범인 MFA 철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넷째, 정책실험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가져다 줌. 실시할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던 인하계획이 UR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 우리나라 수입에 미치는 충격이 적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관세율수준이 UR의 충격을 견뎌내고도 남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낮아 있기 때문인 것임.

(2) 산업영향의 비계량분석

- UR협상 의제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본 개략적인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와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시장에서의 피규제현황을 종합해 보면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비계량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상계관세가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무역관련투자협정의 타결은 우리 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어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보았음.

(3) 정책대응방안

- UR협상타결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리가 받게될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문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될 것임.
- 산업부문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정책과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제조업부문에서는 관세, 비관세 협상결과 여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등 보완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서비스부문은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보완대책, 즉 국내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업종별 국제화전략의 추진 및 현행 각종 규제제도의 정비·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가장 우려되고 있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장단기 전략을 펴나가야 될 것임.
  · 장기전략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구조 조정시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단기전략으로는 피해가 발생되는 부문에 대한 소득보상대책의 추진과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나하나쯤 하지말고 내가먼저 에너지절약